

상임감사 위 원
주 기영

처 장	본부장	부사장	사 장
이 홍민	정기하	김종현	

작성일 : 2013.09.

작성자 : 인사팀장 권오복 권오복

재산등록제 실시 계획(안)

일
상
감
사
필
No. 9
인사팀장

1. 목 적

- 금품 관련 비위 발생 징후를 사전에 감지함과 동시에 해당 직원의 경각심 고취를 통해 공사의 윤리경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체 재산등록제도를 실시
-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사 임원에 대해서는 재산등록제를 운영 중에 있음
- 임원 선임 가능성이 높은 1급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청렴문화 확산 도모

2. 실시 개요

구 분	세부 내용	비 고
재산등록	· 기준일 현재의 재산 현황(현금, 예금, 부동산 등) 신고 · 정기 : 매년 1회(매년 12.31일자 기준) · 변동 : 최초 재산등록대상자가 되는 시점	대상자
검증	· 재산 현황 및 증빙자료 확인	인사부서
결과 활용	· 지속적인 재산 정보의 관리 및 인사운용, 감사시 활용	인사부서

3. 세무 운영 방안

가. 재산등록 대상자

- 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1급 직원(6개월 이상의 교육자 및 휴직자, 공로연수자 제외)

나. 등록 대상 재산

- 본인 소유의부동산 소유권 · 지상권 및 전세권
- 본인 소유의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 증권, 채권, 채무
- 본인 소유의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및 항공기 등
- ※ 등기부등본, 잔액증명서, 매매계약서 등 재산 종류별 증빙서류 첨부

다. 등록 시기

- 정기 신고 : 매년 12.31일자 기준 재산 현황을 신고
- 변동 신고 : 신규 대상자가 된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재산현황을 신고
- ※ 국내 귀임자의 경우에는 귀임일을 기준으로 적용(해외 부임자는 발령일 기준)
- 신고의 생략 : 변동신고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신고 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 또는 정기 신고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변동 신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고 생략하고 직전 신고 현황으로 같음
- 등록 기간 :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

라. 등록 결과 심사 및 활용

- 등록된 재산 현황 신고서 및 증빙자료에 대한 확인 (인사부서)
- 등록된 재산 현황은 필요시 인사운용 및 전보에 활용

마. 불성실 등록자 제재

- 제재 대상 : 등록 기한 위반, 자료 고의 누락 및 허위 기재, 증빙자료 미제출 등
- 제재 조치 : 인사담당 본부장 명의의 경고문서 발송

4. 향후 계획

- 본 방침 결재 이후 '13.12.31일 기준 1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산 등록제 시행
- 공로연수, 6개월 이상의 장기 교육 및 휴직자는 제외

참 부 : 1. 재산현황신고서 1부.

2. 재산 등록관련 세부 작성 기준. 끝

<첨 부 1>

재산 현황 신고서

작성기준일 : 20 . 12. 31.

작성자 : (인)

□ 부동산

구분	권리구분	소재지(면적)	용도	현재가액	비고
토지	소유권		지목 :		
아파트	전세권				
단독주택	소유권	대지 : 건물 :			
건물	지상권	대지 : 건물 :			
	소유권	대지 : 건물 :			

□ 자동차 · 건설기계 · 선박 및 항공기 기재요령

구분	권리구분	종류	취득가액	비고
자동차	소유	NF소나타 2005년식, 2,000cc		
건설기계	리스			
항공기	렌트			
선박	소유			

□ 예금 기재 요령

금융기관명	계좌형태	계좌번호	현재가액	비고
AA은행	적금			
	예금			
BB투자신탁	적립식계좌			
CC보험	생명보험			
	연금보험			

□ 유가증권 기재요령

증권종류	증권명	종목코드(상장주식의 경우)	가액	비고
주식	GG전자			
국채				
공채				
회사채				

□ 채권·채무 기재요령

종류	가액	거래 기관 또는 상대	용도	비고
채권	1,000천원	홍길동	사인간 거래	010-XXXX-XXXX
채무	50,000천원	BB은행(000-00-000)	주택자금	-
채무	100,000천원	김갑돌	임차보증금	010-OOXX-XXXX

별첨 : 증빙자료(잔액증명서, 등기부등본 등) 1부.

<첨 부 2>

재산 등록관련 세부 작성 기준

□ 부동산

구분	권리구분	소재지(면적)	용도	현재가액	비고
토지	소유권		지목 :		
			지목 :		
아파트	전세권				
단독주택	소유권				
건물	지상권	대지 :			
		건물 :			
		대지 :			
		건물 :			

○ ‘토지’ 기재요령

- 대지상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나. 건물” 항목에 건물신고시 그 대지면적을 기재하고, “가. 토지” 항목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 권리의 종류는 등기여부에 관계 없이 소유권·지상권 또는 전세권(임차권)을 기재하고, 미등기권리는 비고란에 “등기미필”이라고 표시한다.
- ①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상속중인 재산 등)에는 비고란에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기재하고,
 ② 본인명의로 되어있으나 실제 타인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에도 신고하고 비고란에 사실관계를 기재한다.
- 지목은 전·답·임야·잡종지 또는 대지 등으로 표시한다.
- 가액은 시·군·구에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재한다. 다만,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지료·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의 금액

을 기재한다.

6. 실거래액(실매입액)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때 기재한다.
7. 공동소유 토지인 경우에 면적란에는 소유지분 면적, 가액란에는 지분에 대한 가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공유”·“합유” 등으로 표시하며, 지분을 기재한다. 본인 등의 명의로 된 토지가 사실상 문중재산인 경우에는 비고란에 “문중재산”이라고 표시한다.
8. 매매계약체결의 경우, 매도한 경우에 잔금이 완불되었더라도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재산을 등록하고, 매입한 경우에는 중도금을 지불한 때부터 등록하며, 비고란에 계약관계와 수수한 총금액을 기재한다.

○ ‘건물’ 등 기재요령

1. 권리의 종류는 등기여부에 관계 없이 소유권 또는 전세권(임차권)을 기재하며, 미등기권리는 비고란에 “등기미필”이라고 표시한다.
2. ①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상속중인 재산 등)에는 비고란에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기재하고,
② 본인명의로 되어있으나 실제 타인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에도 신고하고 비고란에 사실관계를 기재한다.
3. 면적은 대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m^2 (1평은 $3.3m^2$) 환산하여 기재한다.
4. 구조는 단독주택·아파트·빌딩 등으로, 용도는 주택·상가·사무실·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 등으로 표시한다.
5. 가액산정방법
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군·구에서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기재한다.
※ 미입주 분양아파트인 경우에는 납입금액으로 하고, 분양가액을 실거래액란에 기재한다.

② 공시가격이 있는 건물을 제외한 상가·빌딩·오피스텔 그 밖의 건물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제도가 도입될 때까지 동 법률에 따른 대지가액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등) 중 최고가액으로 산정한 건물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실거래액란에 기재한다.

③ 전세권·임차권인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의 금액을 기재한다.

6. 공동소유 건물인 경우에 면적란에는 소유지분 면적, 가액란에는 지분에 대한 가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공유”·“합유” 등으로 표시하며, 지분을 기재한다. 본인 등의 명의로 된 건물이 사실상 문중재산인 경우에는 비고란에 “문중재산”이라고 표시한다.

7. 매매계약체결의 경우, 매도한 경우에 잔금이 완불되었더라도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재산을 등록하고, 매입한 경우에는 중도금을 지불한 때부터 등록하며, 비고란에 계약관계, 매매당사자, 매매일과 수수한 총 금액을 기재한다.

8.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기여부에 관계 없이 등록하여야 하며, 가액란에는 매입가액 또는 사실상 거래가액을 기재한다.

9. 주택·상가 등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은 “채무” 항목에 기재한다.

□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기재요령

구분	권리구분	종류	취득가액	비고
자동차	소유	NF소나타 2005년식, 2,000cc		
건설기계	리스			
항공기	렌트			
선박	소유			

1. 권리의 종류는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권 또는 저당권 등으로 기재한다.

2. 권리의 명세

- ① 자동차 : 차명 · 제작연도 · 배기량 · 차량등록번호 등을 기재한다.
- ② 건설기계 : 기종 명 · 제작회사 · 제작연도 · 건설기계등록번호 등을 기재한다.
- ③ 선박 : 종류 · 용도 · 선박 명 · 총 톤수 · 건조연도 · 선박등록번호 등을 기재한다.
- ④ 항공기 : 기종 · 형식 · 제작자 · 제작연도 등을 기재한다.

3. 가액은 취득가액을 기재한다.

4.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공유” · “합유” 등으로 표시하고, 지분을 기재한다.

□ 예금 기재 요령

금융기관명	계좌형태	계좌번호	현재가액	비고
AA은행	적금			
	예금			
BB투자신탁	적립식계좌			
CC보험	생명보험			
	연금보험			

1. 본인 예금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든 계좌를 등록한다 (계좌별 1천만원 이상이 아님).
2. 예금의 종류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예금 · 저축 · 적금 · 양도성 예금증서(CD) ·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100% 보장성보험만 제외) · 수익증권 · 증권사 및 선물회사예탁금(선물 · 옵션위탁증거금 포함)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인간의 “계”를 제외한다.
3. 적립식인 경우에는 등록기준일 현재의 적립된 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만기계약금액, 동창회비, 친목회비, 문중회비 등 특이사항을 기재한다.
4. 선물 · 옵션위탁증거금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선물 · 옵션거래의 대상물, 계약금액, 최종거래일 등 권리 · 의무사항을 간략히 기재한다.

□ 유가증권 기재요령

증권종류	증권명	종목코드(상장주식의 경우)	가액	비고
주식	GG전자			
국채				
공채				
회사채				

1. 유가증권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명의를 불문하고 등록대상자의 모든 계좌의 유가증권을 등록한다.
2. 증권의 종류란에는 주식·국채·공채·회사채 중 해당되는 항목을 기재한다. (간접금융상품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은 주식으로 등록하고, 동조 제3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6. 예금” 항목에 등록한다)
3. 증권의 종류가 주식인 경우에 한하여 종목코드를 기재한다.
4. 유가증권의 가액산정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다만, 주식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변동신고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변동신고기준일 이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최종가격)으로 산정하고, 「증권거래법」 제194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변동신고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를 말하며, 변동신고기준일 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기준가)로 산정하며, 최종가격 및 기준가의 기준일을 각각 변동사유란에 기재한다.

□ 채권·채무 기재요령

종류	가액	거래 기관 또는 상대	용도	비고
채권	1,000천원	홍길동	사인간 거래	010-XXXX-XXXX
채무	50,000천원	BB은행(000-00-000)	주택자금	-
채무	100,000천원	김갑돌	임차보증금	010-OOXX-XXXX

○ ‘채권’ 기재요령

1. 채권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한다.

2. 주택, 그 밖의 부동산의 임차권은 “3. 부동산” 항목에 기재하고, “8. 채권” 항목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3. 사인간의 채권인 경우에는 비고란에 채무자의 연락전화번호를 기재한다.

○ ‘채무’ 기재요령

1. 채무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한다.
2. 채무의 종류란에는 금융채무(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등), 사인간의 채무, 임대차채무 중 해당되는 항목을 기재한다.
3. 계좌번호가 동일한 두 개 이상의 금융채무는 채무액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4. 금융채무인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채권자명 란에 금융기관명을 기재한다.
5.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등은 채무란에 기재하고, 비고란에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등으로 표시한다.
6. 사인간의 채무인 경우에는 비고란에 채권자의 연락전화번호를 기재한다.
7. 사내 주택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받은 경우도 포함